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6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 국회 소 관 상임위에 제출	2
2.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및 계정 간 이전 보고서를 정기 국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3.
3. 회부연월일 : 2025.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안 제70조제6항 신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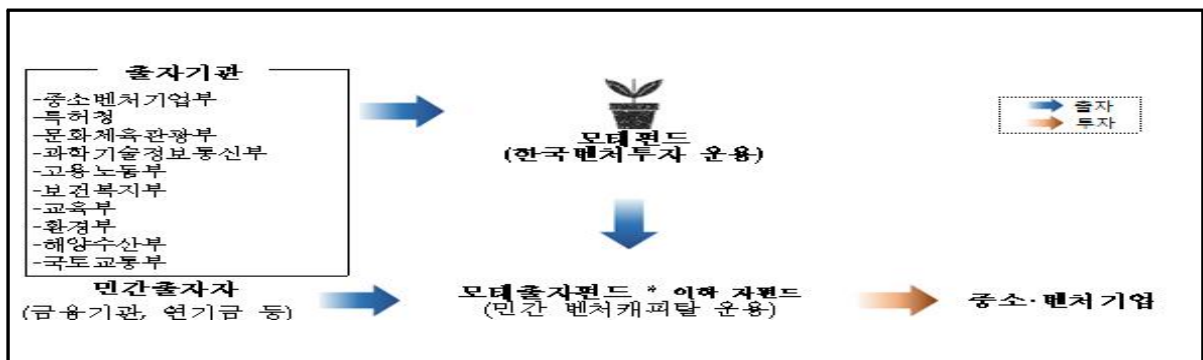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 ⑤ (생략) <신설>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 또는 “모태펀드”)은 현행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가 현행법 제70조 및 현행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와 상호출자를 통해 결성하되,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음¹⁾.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Fund of Funds)임.

모태펀드-자펀드-벤처투자 개념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위 개념도와 같이 모태펀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부처가 출자하고 모태펀드는 다시 민간이 운용하는 자펀드에 출자하며 자펀드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임.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모태펀드가 출범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는 9조 8,617억원의 출자를 통해 총 1,327개, 43조 9,454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자펀드에서 10,729개의 창업·벤처기업 등에 총 33조 4,974억원을 투자함²⁾.

모태펀드는 출자자의 투자 수요에 부합하도록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현재 중진, 지방, 혁신모험 등 총 21개 계정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출자하고 있으며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자펀드 청산³⁾으로 발생한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자금을 출자한 계정에 귀속하여 재출자에 활용됨.

모태펀드 계정 및 출자·투자 대상

계정	출자대상	주요 투자대상
중진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 등에 투자
	루키리그	운용사가 자율 제안한 도전적 투자 대상 등에 투자
	여성기업	여성기업에 투자
	재도약	재도약기업 등에 투자
	스케일업· 중견도약	혁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투자
	임팩트	소셜벤처기업 등에 투자
	글로벌펀드	해외투자 유치, 해외진출 지원 등
	R&D 매칭펀드	하이테크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기관투자자와 매칭투자

2) 301개 자펀드(8조 7,470억원) 청산을 통해 2조 8,739억원을 모태펀드에 배분

3) 자펀드는 투자기간(3~4년)을 포함해 통상 7~10년간 존속하고 청산 후 수익률이 확정됨.

계정	출자대상	주요 투자대상
	창업사업화지원 매칭펀드	창업도약패키지 선정기업 중 창업진흥원이 추천한 기업에 매칭투자
지방	지역 창업초기	지역소재 창업초기기업 등에 투자
	라이콘	지역소재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에 투자
	지역혁신 벤처펀드	지역 혁신기업 등에 투자
	지역AC 세컨더리	지역 소재 창업기획자 등이 1년 이상 보유한 국내 중소· 벤처기업의 구주에 투자
혁신모험	창업초기	창업초기기업에 투자
소재부품 장비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 등 전문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청년	청년창업	청년창업기업에 투자
문화	IP	문화콘텐츠 IP 등에 투자
	수출	해외진출 콘텐츠 등에 투자
	신기술	신기술융합콘텐츠 등에 투자
	M&A·세컨더리	문화산업 M&A 및 세컨더리 투자
	문화일반	문화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
관광	관광기업육성	관광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영화	한국영화 메인투자	한국영화에 메인투자 및 중저예산 한국영화 등에 투자
	중저예산 한국영화	중저예산, 저예산 한국영화 등에 투자
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또는 스포츠산업 연관 산업 등에 투자
	스포츠출발	스포츠산업 또는 스포츠산업 연관 산업 등에 투자 (창업 기획자만 신청가능)
	스포츠 프로젝트	스포츠서비스업 활성화 등에 투자
국토교통	국토교통혁신	드론,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계정	출자대상	주요 투자대상
혁신	(특화)	그린 리모델링, 공간정보 분야 등에 투자
과학기술	공공기술사업화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등에 투자
	뉴스페이스	우주산업 관련 기업 등에 투자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 기업 등에 투자
	SaaS	SaaS기업 등에 투자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기술 등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투자
특허	IP직접투자	IP프로젝트에 투자
해양	해양 신산업	해양 신산업 및 첨단 기술 융합 분야 중소·벤처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중진 (복지)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에 투자
환경	그린스타트업	미래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초기창업기업에 투자
	사업화	미래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스케일업	미래환경산업을 영위하고, 혁신성장이 기대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교육	대학창업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대학교 교직원이 창업한 기업 등에 투자

자료: 한국벤처투자

최근 3년간 모태펀드 출자재원을 살펴보면 2022년 총 출자액 1조 6,005억원의 43.6%인 6,977억원이 회수재원이고 2023년 총 출자액 1조 1,055억원 중 37.9%인 4,190억원이 회수재원이며 2024년 총 출자액 1조 6,490억원의 41.5%인 6,841억원이 회수재원임.

최근 3년간 모태조합 출자재원

(단위: 억원, %)

소관 부처	구 분	2022		2023		2024	
		신규	회수	신규	회수	신규	회수
중소벤처기업부	금 액	5,200	5,256	3,135	3,005	4,540	4,518
	비 중	49.7	50.3	51.1	48.9	50.1	49.9
	총출자액	10,456		6,140		9,058	
문화체육관광부	금 액	2,528	353	2,475	425	3,450	1,300
	비 중	87.7	12.3	85.3	14.7	72.6	27.4
	총출자액	2,881		2,900		4,750	
국토교통부	금 액	200	-	150	-	150	-
	비 중	100.0	-	100.0	-	100.0	-
	총출자액	200		150		150	
교육부	금 액	100	-	75	-	75	-
	비 중	100.0	-	100.0	-	100.0	-
	총출자액	100		75		75	
고용노동부	금 액	-	-	35	15	-	-
	비 중	-	-	70.0	30.0	-	-
	총출자액	-		50		-	
환경부	금 액	200	68	450	50	585	48
	비 중	74.6	25.4	90.0	10.0	92.4	7.6
	총출자액	268		500		6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 액	250	550	165	195	515	300
	비 중	31.3	68.8	45.8	54.2	63.2	36.8
	총출자액	800		360		815	
해양수산부	금 액	200	-	130	-	170	-
	비 중	100.0	-	100.0	-	100.0	-
	총출자액	200		130		170	
특허청	금 액	200	600	-	300	114	125
	비 중	25.0	75.0	-	100.0	47.7	52.3
	총출자액	800		300		239	
보건복지부	금 액	150	150	250	200	50	550
	비 중	50.0	50.0	55.6	44.4	8.3	91.7
	총출자액	300		450		600	
합 계	금 액	9,028	6,977	6,865	4,190	9,649	6,841
	비 중	56.4	43.6	62.1	37.9	58.5	41.5
	총출자액	16,005		11,055		16,490	

자료: 한국벤처투자

한편 현행법 시행령 제44조제3항⁴⁾은 한국벤처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계획에는 해당 연도 회수재원 추계가 포함되어 있음.

이와 같이 현재는 회수재원을 활용한 출자계획이 다음연도 예산안의결 시점 이후에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에는 다음 연도에 자펀드의 청산 등으로 모태조합에 회수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회수재원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모태조합 신규출자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결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이 형식화될 우려가 제기된바 있음⁵⁾.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가 포함된 보고서가 제출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다음 연도 회수 예상금액과 이를 활용한 출자계획에 대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신규 예산의 규모와 이를 활용한 출자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④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_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10, p. 244.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는 상장시장, 금리, M&A 시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현재 연초에 추계하고 있는 회수추정액과 연말에 집계된 실제 회수액 간에도 매년 20~30%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사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및 계정 간 이전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안 제70조제6항 신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국회는 2020년도 예산부대의견⁶⁾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조합 출자 사업 관련 회수자금에 대한 재투자 등 활용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채택한 바 있고, 개정안에 따라 제출된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을 참고하여 정기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2020년도 예산 부대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조합 출자 사업 관련 회수자금에 대한 재투자 등 활용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한편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 제6조⁷⁾는 출자예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로 모태조합의 계정 간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모태펀드 계정 간 이동이 이루어지면 모태펀드 예산에 대하여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른 출자가 가능해지고 계정 간 전·출입에 관련된 사후적인 정보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연도에 알 수 없으므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12.

7) 「2025년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

제6조(계정 간 전출·입 및 협력 출자사업) ① 계정 간 전출·입은 출자예산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중진, 엔젤, 지방, 청년, 혁신모험, 소재부품장비 계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그 외 계정은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로 가능하며, 한국벤처투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계정 간 이전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재정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최근 중소기업모태조합 계정 간 이전 현황

(단위: 억 원)

이전시점	계정		금액	이전시점	계정		금액
	~에서	~으로			~에서	~으로	
2018.5.	중진	혁신모험	1,000	2019.12.	중진	엔젤	280
2018.8.	중진	엔젤	150	2019.12.	중진	지방	600
2018.10.	중진	혁신모험	800	2021.11.	중진	지방	250
2019.1.	중진	지방	200	2021.11.	중진	엔젤	200
2019.8.	중진	엔젤	280	2022.5.	중진	혁신모험	1,000
				2024.1.	중진	지방	1,258
계							6,01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사후적 재정통제 차원에서 해당 연도 회수재원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59